

의안 번호	2429	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5. 30.(금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5. 30.(금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6. 10.(화)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3조에 따라 2024년도 자활기금 결산보고서를 심의·의결 받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기금 조성 총괄 (단위: 원)

전년도말 조성액 [㉠]	당 해 연 도 증 감 액			당해연도말 조성액 [㉡] = [㉠] + [㉢]
	계 [㉣] = [㉡] - [㉢]	조 성 액 [㉡]	사 용 액 [㉢]	
2,024,494,000	10,247,503	75,568,624	65,321,121	2,034,741,503

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」 제13조

5. 검토의견 : 없음

근거법규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

- 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-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-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울산광역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

- 제13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출납폐쇄 후 4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.
-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.
1.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 2.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
 3.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-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·의결을 받아야 한다.